

2026년도 학교법인밝은학원 밝은학교  
사무직원(운전 9급) 공개경쟁 채용공고

학교법인 밝은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밝은학교에서 근무하실 유능한 사무직원(운전 9급)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채용직종 및 모집인원

학교	직렬	계급	채용예정 인원(명)	임용예정일	비고
밝은학교	운전	9급	1	2026.08.01	

### 2.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 마.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3. 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근무처 :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밝은학교 교육행정실

나. 담당업무 : 학생 통학 운전 업무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다. 보수 및 처우

-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함
- 2) 사학연금 가입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2026.06.17(수) ~2026.07.10.(금)

나. 접수기간 : 2026.06.17.(수) ~2026.07.10.(금) 16:00까지

다.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jhg0522@korea.kr](mailto:jhg0522@korea.kr)

(우 : 1022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7번길 104-9

TEL : (031) 911-7060 밝은학교 교육행정실

**(마감일 2026.07.10.(금) 16:00 도착분 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1부. 【붙임1】
-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3) 수험표 1부. 【붙임3】
- 4)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5)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4】
- 7) 신고서(사적 이해관계자)-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5】
- 8)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6】
- 9)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마.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1)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2) 제출된 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 3)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함
- 4) 제출서류를 정확히 작성한 후 접수하여야 함
- 5)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제1차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6.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선발

나.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1) 면접 방식 : 대상자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평가 요소 :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시험 일정(예정) 및 합격자 결정

전 형 별	일 자	발표방법
1차 서류전형	2026.07.13.(월) 오후 15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7.14.(화) 오전 9시 이후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2026.07.16.(목) 오후 15시 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	2026.07.17.(금) 오후 11시 이후	개별통보

- 응시자는 2차 전형 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제시(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라. 최종합격자 결정

- 1) 사무직원 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결정심의를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함.
- 2) 2차 면접 전형위원 채점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산출하여 고득점자 선발
-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
  - 가) 1순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나) 2순위 : 생년월일(연령)이 낮은 자
- 4) 최종합격자가 타 학교 중복 합격 등으로 포기할 경우 차상위자 선발
- 5)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6) 적격심사 결격 조회 확인(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관련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하여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7. 최종합격자의 취소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1)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 2)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3)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5)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 6) 병역복무중인 자 중 2026년 8월 1일 이후 정상 근무가 불가능 한 자

## 8. 시험시행 일반 원칙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자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본 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다.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변경 공고 포함)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반환 가능.

※ 채용서류 일체의 반환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제출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채용 계획(지침)에 따라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밝은학교 행정실(☎031-911-7060)로 문의 바람.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시간 1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 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법인 사정 및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밝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2026. 06. 16.

학교법인 밝은학원 이사장

밝 은 학 교 장

【붙임1】

# 학교법인밝은학원

## 밝은학교 사무직원 채용 응시원서

최근3개월 사진(3*4)	성명	한글		응시기관	밝은학교	
		한자		응시분야	운전 9급	
	생년월일	년 월 일		※수험번호		
	E-mail			자택		
	주소			핸드폰		
학력사항	기간		출신 학교 및 전공		소재지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학과			
	~		대학원 학과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정규직여부/직급	담당 업무 (시설, 예결산, 계약, 급여, 인사 등)	
	~					
	~					
	~					
병역	군 별		병과		최종계급	
	복무기간	~			면제사유	
장애및유 공자여부	장애 : [ 여( ) ] : 등급( ) , [ 부( ) ] 국가 유공자 관련 여부 기재 :					
자격면허	자격명	취득일	시행처	컴퓨터 능력	사용가능 S/W	
					WORD : 상, 중, 하	EXCEL : 상, 중, 하
					PPT : 상, 중, 하	PHOTOSHOP : 상, 중, 하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지원자 : (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 ③ 장애인 여부 및 군경력, 국가유공자 관련 사항 : 정확히 표기하실 것.
- ④ 수험표의 수험번호는 기재치 않음(접수처에서 기재)

## 자기소개서

1. 지원동기

2. 직무에 대한 자격증 및 봉사활동을 경험 사례를 통해 기술

3. 경력사항 기술(수입, 지출, 인사, 공사업무, 급식업무 경험)

4. 직무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어진 양식을 이용하시되 3장 이내로 작성합니다.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3】

학교법인 밝은학원 신규 사무직원 [운전 9급] 임용후보자 공개경쟁시험		수험표	사진 최근 3개월이내 반명함판 (3cm*4cm)
응시직급	운전 9급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 수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시 학교에서 기재)

※ 수험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붙임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학교법인 밝은학원의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 연락처, 학력·경력·자격·병역·이메일 등	인력채용을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채용심사(절차)기간만 보유, 이용, 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경찰서, 관공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채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학교법인 밝은학원이사장 귀하



**【붙임6】**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채용 후보자 작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같은 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같은 법 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문항	해당 여부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3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본 내용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 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 【붙임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학교법인 밝은학원이사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